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2. 2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8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2. 2.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정상택

가. 제안이유

구세감면조례의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
구세감면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법령기능
을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한 구세감면조례의 목적
조항에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입법목적을 새
롭게 추가하여 보완함. (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
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01. 12. 1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 내용 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안 제1조 목적규정만 표준안대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판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2. 14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세감면조례의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구세감면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법령기능을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규정한 구세감면조례의 목적조항에 법령 기능 보완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입법목적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완함.
(안 제1조)

3. 근거법령 :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 제7조 내지 제9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함
(서울시 세정13415-1302, 2001.12.12)
- 나. 입법예고 : 생략함(구세감면조례의 단순한 설치목적 보완)
- 다. 2002. 2. 8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세 (이하 “구세”라 한다)”를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로, “지역사회의 전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u>의하여</u>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u>인하여</u>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u>한다</u>)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따라</u>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u>한다</u>)----- ----- -----<u>법령기능을 보완하고</u> <u>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u> 지역사회의 <u>건전한</u> 발전에 <u>이바지</u> 함-----</p>